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(령)안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천연가스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한국석유공사법」”을 “법 제25조의 2”로, “한국석유공사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)”를 “한국석유관리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(종전의 제3항) 및 제3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공사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제1항 또는 제2항”을 각각 “한국석유관리원은 제1항”으로 한다.

2. 법 제19조에 따른 부과금 및 과오납금의 환급·충당에 관한 사무 제45조제4항에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제4호를 삭제한다.

22.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한 과징금의 징수

23.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한

과징금의 징수

24.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 제공의 요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법 제18조제1항·제4항과 제37조제1항·제4항의 부과금 및 가산금 징수와 관련된 자료제공의 요청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~제6조 생략

제7조(다른 법령의 개정)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한국석유공사:”를 “한국석유관리원: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,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3호의2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제1호, 제3호 및 제3호의2”를 “제1호 및 제3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“한국석유공사·한국광해광업공단·한국석유관리원”을 각각 “한국광해광업공단·한국석유관리원”으로 한다.

나.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19조에 따른 부과금 및 과오납금의 환급·충당과 관련된 사무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7조(부과금의 환급 등)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1. ~ 10. (생 략) <u><신 설></u> ② ~ ⑦ (생 략)	제27조(부과금의 환급 등) ① 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10. (현행과 같음) <u>11. 천연가스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</u> ② ~ ⑦ (현행과 같음)
제28조(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)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「한국석유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석유공사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)에 위탁한다. 1. (생 략) <u><신 설></u> 2. (생 략) <u>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부과금 및 과오납금의 환급·충당에 관한 사무를 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(이하</u>	제28조(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) ① --- ----- ----- ---- <u>법 제25조의2</u> ----- --- <u>한국석유관리원</u> ----- ------. 1. (현행과 같음) <u>2. 법 제19조에 따른 부과금 및 과오납금의 환급·충당에 관한 사무</u> 3. (현행 제2호와 같음) <u><삭 제></u>

“한국석유관리원”이라 한다)에 위탁한다.

③ 공사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탁 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사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.

④ 공사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탁 받은 사무의 월별 처리상황을 매월 해당 사무를 처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

제45조(권한의 위임·위탁 등) ① (생략)

②·③ 삭제

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한다.

1. ~ 21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② 한국석유관리원은 제1항---

③ 한국석유관리원은 제1항---

-----.

제45조(권한의 위임·위탁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.

1. ~ 21. (현행과 같음)

22.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
까지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
이 부과한 과징금의 징수

23.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
까지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
이 부과한 과징금의 징수

<신 설>

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.

1. ~ 3. (생략)

4.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 제공의 요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법 제18조제1항·제4항과 제37조 제1항·제4항의 부과금 및 가산금 징수와 관련된 자료제공의 요청

⑥ ~ ⑨ (생략)

<부 칙>

24.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 제공의 요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법 제18조제1항·제4항과 제37조 제1항·제4항의 부과금 및 가산금 징수와 관련된 자료제공의 요청

⑤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⑥ ~ ⑨ (현행과 같음)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~제6조 생략

제7조(다른 법령의 개정)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한국석유공사:”를 “한국석유관리원: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, 같은 호에

	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3호의2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제1호, 제3호 및 제3호의2”를 “제1호 및 제3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“한국석유공사·한국광해광업공단·한국석유관리원”을 각각 “한국광해광업공단·한국석유관리원”으로 한다. 나.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19조에 따른 부과금 및 과오납금의 환급·충당과 관련된 사무
--	--